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심 의 사 항	００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심의 안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０００	이번 정보공개 심의회에서는 2건이 상정되었는데 2건 모두 상가운영처 관련된 내용으로 자세한 설명은 관련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０００	먼저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000님으로 0000년 0월 0일 U-화재예방시스템 서비스 이용 협약서 정보공개를 공단에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상가운영처에서는 비공개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동 협약서 제17조 비밀유지의무 1항에 의거하여 제3자 의견조회 결과 정보공개를 “수락할 수 없음”으로 회신을 받아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특정업체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내부관리에 속하는 상황으로 공개될 경우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구인 000님이 0월 0일 이의신청을 하셨습니다.

심 의 사 항	０００	협약서에서 정보공개 시 서면동의가 없으면 정보공개가 불가하여 제3자의 의견조회를 한 결과 “정보공개를 수락할 수 없음”을 통보 받아 비공개하였습니다. U-화재예방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3자간에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계약하였고, 이 기간 동안 위 시스템 서비스 이용료 체납과 관련하여 체납 이용료 청구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０００	잠깐만요, 지금 현재 이 정보공개 청구가 예전 협약서가 아니고 2014년에 양자 간 새로 맺은 협약건에 대한 협약서를 공개해달라는 얘기죠?
	０００	예, 맞습니다.
	０００	그럼 예전 경과사항은 크게 중요치 않고 현재 요구한 협약서 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０００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 간 체결하였습니다.
	０００	이전에 3자간 계약은 2013년 12월부로 끝나서 상관이 없고, 2014년도부터 새롭게 맺은 계약의 협약서를 공개해달라는 말이죠?
	０００	예.

심 의 사 항	0 0 0	그 계약서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계약당사자 간 정보공개 서면 동의가 없으면 정보공개가 불가한데 제3자 의견조회를 한 결과 정보공개를 수락 할 수 없음으로 나온거죠?
	0 0 0	네, 맞습니다.
	0 0 0	그런데 돈을 내는 입장에서는 계약이 바뀌었는데 계약과정에 참여도 하지 않고 정보도 공개 안 해주면 돈을 왜 내겠습니까?
	0 0 0	현재는 양자 간 계약이어서 청구인쪽은 계약상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0 0 0	그럼 지금 소송 중인 건은 예전 계약 건인 거네요?
	0 0 0	예, 맞습니다.
	0 0 0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2008년도에 3자 간에 U-화재예방시스템 이라는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하는데 상인들 간 합의가 안되서 돈을 지불하지 못했고 공단은 이용료를 지불하였습니다. 그 계약기간이 끝나고 공단에서는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그 시스템을 양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새로운 계약건에 대한 협약서를 요구한 것입니다.

심 의 사 항	0 0 0	계약 당사자가 거부하면 정보공개를 못하는 건 알겠는데 이 정보가 그렇게 치명적이고 기업의 영업상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정보인지가 의문스럽네요.
	0 0 0	지금 계약건이 저희 공단과 제3자가 계약 당사자인데 제3자측에서 정보공개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0 0 0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공단에서 제3자를 설득을 해서 공개하도록 노력을 해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전체 중에 영업상 이익을 크게 해하는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다른 부분은 공개한다든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게 있어야 하는데 안된다고 비공개라고 딱 잘라 말하기에는 좀 그렇네요.
	0 0 0	그런데 사실 우리 공단은 이용만 하는 입장이고 시스템 자체와 모든 서버는 계약 상대방의 소유이기 때문에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0 0 0	물론 제3자와의 법적다툼이 있을 수는 있지만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0 0 0	소송이 어느 단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협약서가 공개되었을 때 제3자가 침해받을 수 있는 권익을 생각해보면, 경쟁업체가 많이 있는데 금액이라던지 이런 정보가 노출되면 타 경쟁사

		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가 있는 문제여서 영업상 비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협약서에 비밀유지에 관하여 명시하여 지켜달라고 한 부분을 공개하는 게 과연 옳은지 의문이 듭니다. 양자간에 합의할 문제지 우리가 타당성 문제까지 심의의 기초자료로 삼을 필요는 없지 않나 싶네요.
심	０００	원칙적으로 맞지만 공단에서 이 소송과 무관하게 제3자와 합의는 취해봐야 하는 게 아닌지에 대한 질문은 생깁니다.
의	０００	제3자의 영업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상인도 시민이고 시민의 입장도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3자 측에서 안된다고 답변했다고 공단이 전면 비공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사		
항	０００	이 정보를 공개했을 때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시스템의 계속 설치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재예방시스템은 공유재산으로 수해자가 서울특별시이기도 하고 임차인이기도 한데 공유재산의 관리인인 공단만 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설에 대한 계약이 상인들의 이해관계를 침해하지는 않는 다는 것이죠.

심 의 사 항	０００	철거해서 무용지물이 되느니 공단의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계속 사용하는게 낫다고 판단하여 공단하고만 계약이 체결된 것이죠.
	０００	그럼 지금 이 계약 건은 상인들의 이해관계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지네요.
	０００	비밀의무를 쌍방에 걸었는데 협약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공단한테 오는 패널티는 없나요?
	０００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의 충돌이라고 정보공개법은 공개주의고 협약서 상으로는 비공개를 하라고 하는 거니까.
	０００	아 잠시만요, 협약서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보니 본 협약과 관련하여 얻은 업무상의 비밀, 각 종 보고서, 정보 또는 기술지식, 기타 자료 등에 대해서인데, 이 것은 시스템 자체에 대한 비밀유지 아닌가요?
	０００	그런가요?
	０００	행정청의 계약서는 다 공개되고 있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０００	협약서의 기타자료라고 적시되어있는 부분에 대해 KT에 질의한 것인데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 입니다.

심 의 사 항	0 0 0	아니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하면 당사자 간에 공개적으로 계약을 한 건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까? 공공의 이익에서 봤을 때, 비공개 회의도 시장님께서는 다 공개하라고 하는 마당에.
	0 0 0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협약서에 비밀유지를 걸어놓는 경우는 많은데 이 경우는 이 협약서 자체를 비밀유지에 해당하는 정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네요.
	0 0 0	U-화재시스템의 기술에 대한 것, 시스템에 관련된 자료, 기능, 성능, 보고서 등에 대한 비밀유지지 계약서 자체를 비밀유지 해달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0 0 0	정부3.0이 100% 투명한 공개인데.. 정보공개에서 청구인의 목적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비공개는 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0 0 0	그런데 KT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0 0 0	당연히 협약서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정보공개 불가 답변이 왔네요.
	0 0 0	KT측에 2번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거네요?

심 의 사 항	０００	네, 처음 정보공개 청구 들어왔을 때랑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 두 번 질의하고 답변 받았습니다.
	０００	제3자 의견은 참고의견이고 이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０００	비공개 사유가 명확치 않으니 공개하는 걸로 결정합시다.
	０００	모두 동의하십니까?
	０００	네, 동의합니다.
	０００	제안부서도 동의하십니까?
	０００	제3자 측이 비공개요청을 하였고 공단과의 신뢰관계를 생각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０００	제안부서 외 모든 위원의 의사가 공개이기 때문에 공개로 결정하겠습니다. 공개결정을 하고 이 협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자문을 받아 제3자에게 통보해 주세요.
	０００	정보공개 사유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고, 협약서 제17조에 따라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는 정보에 포함되는 정보로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공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심 의 사 항	０００	다음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000님이시고요, 청구일은 0000년 0월 0일 2011년 영등포역쇼핑센터 리모델링 후 하자보수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셨고 공개여부는 비공개로 결정하였습니다. 비공개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진행중인 재판 및 소송에 관련된 정보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비공개를 결정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제3자 의견을 요청하여 제3자로부터 정보공개 불허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0000년 0월 0일 이의신청 청구를 한 건입니다.
	０００	근데 이 소송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０００	원고인 쇼핑센터 000와 피고인 0000 0000, 시공사입니다.
	０００	청구인은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분이신거네요.
	０００	예전에도 비슷한 사항을 다루었던 것 같은데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비공개 사유로 부족합니다. 또한 이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재판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방해하는가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０００	그럼 이 청구인은 쇼핑센터의 주주인거죠?

심 의 사 항	０００	청구인은 소송과는 별건으로 돈을 지불한 주주입장에서 하자보수 내용이 무엇인지 과연 이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가 궁금할 수 있겠죠.
	０００	직무수행에 곤란사유도 아니고 청구인은 서류상 원고도 피고도 아닌 거네요.
	０００	청구인이 이의신청 했을 때, 민사상 재판에 필요한 정보로 청구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０００	본 자료가 소송당사자에게 유불 리가 있다 하더라도 재판기관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청구인은 단지 이 많은 하자가 어디서 발생하는지가 궁금할 수 있죠.
	０００	그리고 이 정보는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만 하면 즉시 제공해야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재판기관에 직무수행을 방해한다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０００	모두 동의하십니까?
	０００	네, 동의합니다.
	０００	이로써 공개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2014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